

특 별 비 용 조 정 명 세 서

①과세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		③성 명	
④ 구 분 (「조세특례제한법」 근거조항)	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명세			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	⑨필요경비 불산입 계 (⑥+⑧)
	⑤필요경비 계 상 액	⑥한 도 초과액	⑦차감액 (⑤-⑥)		⑩필요경비 산입 계 (⑤-⑨)
⑩①연구·인력 개발 준비금(제9조)					
⑩②					
⑩③					
⑩④					
⑩⑤					
⑩⑥					
⑩⑦					
⑩⑧					
⑩⑨					
⑩⑩					
⑩⑪					
⑩⑫					
⑩⑬준비금 계				※	
⑩⑭특별·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				※	
⑩⑮준비금 및 특별· 특례상각비 합계				※	

작 성 방 법

1. 필요경비 조정명세서상 명세란(⑤~⑦)에는 해당 계정 조정명세서상의 본인 계상액과 한도초과액을 ⑤란 및 ⑥란에 각각 적습니다.
2. ㉓준비금 계의 ⑧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란(※표시란)에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(별지 제69호 서식)상의 ⑦조정감의 준비금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, 이 금액을 기초로 각 준비금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부인액란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
3. 각 준비금의 최저한세 적용 필요경비 부인액은 각 준비금의 조정명세서상의 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부인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4. ㉔특별·특례자산 감가상각비 계의 ⑧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 불산입액란(※표시란)에는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상의 ⑦조정감란 중 ㉔특별·특례감가상각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각 자산별로 불산입액을 계산한 후 이를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.
5. 준비금 및 특별·특례상각비 합계란의 최저한세적용 필요경비부인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(별지 제96호서식)상의 ⑦란의 ㉔소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
6. 종전의 법률에 따라 감면이 계속되는 경우로서 근거법 조항이 바뀌었거나 근거조항이 삭제된 경우에는 해당 감면명칭과 종전 법률의 근거조항을 적어 적용합니다.